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사모사채권 포함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9월 03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09월 03일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사모사채권 포함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(1) 투자대상 1.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,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(1) 투자대상 1.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 및

	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	사모사채권(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)을 포함하며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글로벌인프라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 :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사모사채권 포함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09월 03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09월 03일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사모사채권 포함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투자대상** (2)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)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.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,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투자대상** (2)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)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1.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 및

	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	사모사채권(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)을 포함하며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2. 주요 변경내용: 투자대상자산 사모사채권 포함, 자투자신탁 추가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. 09. 03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) <추가>	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2. (생략, 현행과 동일) 3. 하나 UBS 개인연금파워 e 단기채증권 전환형자투자신탁[채권]
제 17 조 (투자대상자산 등)	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	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 및 사모사채권(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)을 포함하며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

[변경등록신청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<추가>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 년 09 월 03 일

에 관한 사항		- 투자대상자산 사모사채권 포함 - 자투자신탁 추가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명칭 <추가>	**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명칭 하나 UBS 개인연금파워 e 단기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[채권] 펀드코드 : CD721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투자대상** 1.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**가. 투자대상** 1. 채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+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) 및 사모사채권(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)을 포함하며,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(취득시 신용 평가 등급이 A3+이상인 것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